



제 422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어획물 판매중개·구매대행 행위 금지〉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2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어획물 판매중개·구매대행 행위 금지 등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 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1. 15.
3.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Ⅲ. 검토의견

1. 불법어획물 판매중개·구매대행 행위 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등) ① ----- ----- ----- ---제품(이하 이 조에서 “불법어획물”이라 한다)----- ----- -----.
<신설>	②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신 설> <신 설> 제70조(과태료) <신 설>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제2항을 위반하여 제7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에서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금어기나 금지채장 등 법률에 따른 명령¹⁾을 위반한 불법어획물²⁾의 소지·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온라인마켓 등에서 금어기나 금지채장 등 위반이 의심되는 수산물이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단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수산물 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자’³⁾의 참여가 필요한데,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판매 또는 유통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률 적용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채장·채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채장·채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채장, 포획금지채장 등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3)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뜻함. -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 이에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불법어획물을 발견하는 즉시 이를 삭제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통해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 금지체장 등은 산란기 어종 및 치어 등에 대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중개나 구매대행을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점에서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월부터 불법 수산물 온라인 감시 TF를 조직하여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상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불법 수산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조사 및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⁴⁾.

□ 다만,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내용 공표 등의 제재수단까지 마련하고 있으므로,

4) 불법 수산물 온라인 감시 TF의 구성 및 활동경과는 [참고자료2] 참조

규정의 수범대상자가 법률 준수를 위해 불법어획물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정보공유체계 등이 마련·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도의 집행여건을 정비·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관련된 부처 등의 의견으로, 우선 해양수산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정부 및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의 홈페이지와 리플렛 등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 기준, 개정사항,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가 관련 행정기관에 어획물 불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질의회신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현재 법률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의견과 같이 하위 법령에 규정할지 또는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온라인쇼핑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등 수산물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구체적이고 복잡⁵⁾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불법어획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개정안에 따라

5) 금어기 수산물은 총 33종, 금지체장 수산물은 총 34종으로 다수가 특정되어 있고, 해당 수산물의 종류별로 상이한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위도·경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지 체장 또는 체중도 종류별로 상이하고 각 지역별 예외규정도 존재하는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통신판매중개자가 알려야 할 정보나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 금지체장 등

□ 포획금지기간[시행령 제6조, 별표1] : ('24년) 33종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대구	1.16~2.15	새조개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문치가자미	12.1~익년 1.31	소라	6.1~6.30(여수 삼산면), 6.1~8.31(제주), 7.1~8.31(제주 추자도), 6.1~7.31(울릉, 독도)
연어	10.1~11.30	전복류	9.1~10.31 (단, 제주 10.1~12.31)
전어	5.1~7.15 (단, 강원, 경북 제외)	코끼리조개	5.1~6.30 (강원, 경북)
쥐노래미	11.1~12.31	키조개	7.1~8.31
참홍어	6.1~7.15	가리비	3.1~6.30
참조기	7.1~7.31 (단, 유자망 4.22~8.10)	넓미역	9.1~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꽃게	6.21~8.20 (단, 서해5도서 7.1~8.31, 그 중 백령·대청·소청도는 7.16~9.15)	우뭇가사리	11.1~익년 3.31
대게	6.1~11.30	툰	10.1~익년 1.31
붉은대게	7.10~8.25 (단, 강원연안자망 6.1~7.10)	해삼	7.1~7.31
갈치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살오징어	4.1~5.31 (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지망 4.1~4.30)
고등어	4.1~6.30 중 1개월	말쥐치	5.1~7.31 (단, 정치망, 연안, 구획 6.1~7.31)
옥돔	7.21~8.20	낙지	6.1~6.30 (단, 시도지사가 4.1~9.30기간 중 1개월 이상 별도고시 가능)
오분자기	7.1~8.31 (제주)	명태	1.1~12.31(연중)
주꾸미	5.11~8.31	삼치	5.1~5.31
감성돔	5.1~5.31	대하	5.1~6.30
참문어	5.16~6.30 (단, 시도지사가 5.1~9.15기간 중 46일 이상 별도고시 가능)		

□ 포획금지체장[시행령 제6조, 별표2] : ('24년) 34종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문치가자미	20cm	민어	33cm	청어	20cm
참가자미	20cm	방어	30cm	대게	9cm
용가자미	20cm	불락	15cm	소라	5cm (제주, 울릉, 독도 7cm)
기름가자미	20cm	붕장어	35cm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 (제주)
감성돔	25cm	조피불락	23cm	전복류	7cm (제주 10cm)
돌돔	24cm	쥐노래미	20cm	기수재첩	1.5cm
참돔	24cm	참홍어	42cm (체반폭)	참조기	15cm
넙치	35cm	꽃게	6.4cm	고등어	21cm
농어	30cm	갈치	18cm (항문장)	갯장어	40cm
대구	35cm	말쥐치	18cm	살오징어	15cm (외투장)
도루묵	11cm	키조개	18cm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미거지	40cm
대문어	600g (중량)				

□ 암컷 포획금지: 4종(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품 종	포획금지기준	품 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 대게	

□ TF 구성·운영

- (기간) '24. 10. 23.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전 까지
- (구성) 지도교섭과에서 총괄하고 어업관리단내 온라인 감시반, 현장 점검반으로 TF 구성
 - * (온라인 감시반) 서해단 운항정지 지도선 인력 2~3명, (현장 점검반) 어업관리단 육상단속 인력 활용
- (운영방식) 상시 감시를 통해 온라인상 위반 의심 수산물 및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 발견시 조사 진행 및 게시물 수정·삭제 병행

□ 활동 경과

- 불법 수산물 유통 관리 : 모니터링 1,447건, 조치 120건(누계)

연번	품명	판매 게시물*	점검건수	의심건수	조치건수	주 판매처
1	살오징어	458건	-	-	4	네이버쇼핑 (쿠팡, 옥션 등)
2	전복(제주산)	15건	-	-	1	
3	돔	216건	-	-	-	
4	우뚝가사리	17건	-	-	2	
5	연어	25건	-	-	4	
6	민어(자연산)	538건	-	-	-	
7	문치가자미	150건	-	-	-	
8	대게(일본산)	28건	-	-	3	네이버쇼핑 네이버밴드

<비고> '네이버쇼핑' 검색 시 타 플랫폼(옥션·G마켓·쿠팡 등)의 판매정보가 표출됨을 활용

- 불법어구 유통 관리 : 모니터링 12,484건, 조치 114건(누계)

연번	품명	판매 게시물*	점검건수	의심건수	조치건수	주 판매처
1	개불펌프	0건	-	-	-	네이버쇼핑 (낚시용품점)
2	꽃게망	730건	-	-	-	
3	가프갈고리	5,429건	-	-	-	
4	작살	6,325건	-	-	-	

<비고> 꽃게망, 가프갈고리, 삼지촉, 작살은 '낚시' 또는 '해루질' 검색어를 포함한 건수만 산정